



급식물품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품 명	예정수량	기초금액(원)	개찰일시 및 장소	납품기간
배추김치 외 605종	자체식단표에 따름	금7,968,264원 (금칠백구십육만팔천이백육십사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6.9.18.11:00 보석마을 입찰집행관 PC	2026.10.1.~ 2026.12.31.

※ 납품방법 : 보석마을(이하 본원)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고, 물량은 본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개찰일시 : 전산시스템 등 장애로 인해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 단가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3. 계약방법 : 단가계약

4. 구매예상금액 : 금71,400,000원(금칠천일백사십만원) - 3개월 간의 예상 급식비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당해 사업(제조·판매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에 의거 식품소분·판매업 등 집단급식소에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영업신고를 한 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업소가 대구광역시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동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특별법인 또는 단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식품 운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라. 다음의 시설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

-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 사용 가능)

- 2) 식품 선별·분류 작업시(작업장) 항상 찬 곳(0~18℃)에서 실시 할 것
- 3)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방수) 처리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관리 할 것
- 4) 작업장에서 쥐, 바퀴 등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청결 관리 할 것
 - 세척시설 ·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구비할 것
 - 바닥, 벽, 천장, 폐기물용기, 환기시설, 방충시설 등의 청결 관리 할 것
- 5) 작업장 사용 칼, 도마 등 조리기구의 경우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 사용할 것
- 6)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가능한 창고를 구비할 것(이 경우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 가능)
- 7) 보관창고 내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 기준(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냉장 및 냉동 시설을 구비할 것(다만, 창고에서 냉장 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 8) 식품 등을 보관·운반·진열시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관리를 할 것
- 9) 납품에 적합한 냉동 또는 냉장차량을 갖추어 것(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중합 보험 등록

바. 본원에서 제시한 현품설명서대로 납품 가능한 자.

사. **본 물품 구매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품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급식품 품목별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본원 행정복지팀(☎053-267-4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약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제한적최저가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9월 28일까지**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계약단가 및 납품장소

- 가. 낙찰자의 그룹별 투찰금액 입찰품목 내역서의 **개별품목 단가로 계약을 체결함**
- 나. 계약시작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낙찰자는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보석마을의 발주에 의해 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본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급식물품구매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 및 계약특수조건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과“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14일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보석마을

식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보석마을(이하 본원)이 행하는 급식물품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 규격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을”이 “갑”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급식사정에 따라 입찰 품목외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은 본원 계약관의 시장조사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납품단가(원단위 이하는 반올림)로 결정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2026. 10. 1. ~ 2026. 12. 31.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갑”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갑”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8:50~09:00에 본원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 영양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갑”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3:3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 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을”은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을”은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갑”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을”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을”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 검사를 한다.

②“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표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 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③또한,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을”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 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급식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본 원 내에서 발생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한다.

제11조(계약수량변경) 본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본원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대금정산) ①“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 하되 기본적으로 매월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서면 경고 조치한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 발생의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 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갑”은 “을”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고 미조치 시 추가 경고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6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의무양도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승낙사항) ①“을”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을”은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9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①계약상대자는 **【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계약관련서류)①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증(사본) 1부, 생산물책임보상보험(사본) 1부, 냉동차량등록증(사본) 1부, 납품기사건강검진(사본) 1부, 국세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청렴이행각서 1부.

급식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 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물품계약 일반조건 예규를 2026. 10. 1. - 2026. 12. 31.까지 준용한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표면온도, 선도, 모양, 개별 포장상태,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겔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5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할 것.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 ①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 1)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가동 중인 냉동·냉장차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 2)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 3)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 담당 영양사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 4) 식품 식재료 운반 시 소독된 장화를 착용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 5)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 6)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한다.)
 - 7)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 8)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 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 9)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 재동결 흔적이 없을 것
 - 신선도 확인 채소 및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 ~ 25℃ (상온)
 - 10) 식자재 운송차량은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품목별 기준

①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②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 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 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③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